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98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이용선・김종민・박지원

이재관・황 희・고민정

김영호 · 염태영 · 권향엽

허성무 · 강준현 · 박해철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. 또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

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90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③
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	
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	
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	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	
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	
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	
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	
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	<u>,</u>
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	
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・	1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	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	
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	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	
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	<u>.</u>

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<신 설>

2. · 3. (생략) ④ ~ ① (생략)

<u>1천만원</u>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
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
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
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금액
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① (현행과 같음)